
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안) 주요 내용

- 입법예고안 -

1.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

-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「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」 수립(안 제10조 및 제11조)
 -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및 대기오염도 전망, 대기질 개선목표, 영향권역, 지역배출총량제, 저공해자동차 보급, 교통 및 에너지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

2. 대기오염총량관리

- 환경부장관은 「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」을 수립, 시·도에 통보(안 제11조)
 - 지역별 총량관리 목표,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,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,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규모 등을 규정
- 시·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「지역총량관리 시행계획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(안 제12조 및 제13조)
 - 미이행 시 도시개발, 산업단지개발, 주택건설 등 제한
-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
 -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허가조건으로 부여
 - 총량규제 시에도 최소한의 배출허용기준은 적용하되, 배출부과금 부과 및 저황유 사용의무는 면제
 -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 부착 의무화

3. 배출권 거래제(안 제16조)

-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는 총량을 초과 삭감한 경우 그 초과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거나, 다음 년도 사용을 위해 예탁(banking)
 - 사업자가 당해 년도에 할당된 배출량 보다 초과 배출하게 된 경우 타인의 배출권을 구입하여 총량삭감의무 달성 가능
- 총량규제 대상 외의 사업자도 배출권 거래에 자발적 참여(Opt-in) 가능
 - 스스로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가 되고, 배출량 산출가능 기기를 부착

4. 저공해 자동차 보급

- 자동차 제작자는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,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(안 제19조)
 -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「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협회」 구성
-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(안 제27조)

5.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

- 운행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, 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(안 제20 및 제21)
-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행차에 대한 정밀검사 의무화(안 제20제3항 및 제22조)
 - 불합격차량 중 정비를 해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 소요 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폐차를 권고하고, 보조금 지급

6.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등

- 관리권역내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기용제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만을 공급·판매·사용하도록 의무화(안 제29조)
- 관리권역내 주유소는 주유기에 VOC 회수장치 부착(안 제30조)

7. 재원의 확보 및 관리

-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특별회계 설치(안 제32조 및 제33조)

8.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설치
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「수도권대기환경관리 위원회」 설치(안 제34조 및 제35조)
-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기능을 가진 사무기구 설치(안 제36조)